

2026. 8.

유럽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저작권계약의 방식적 유효성 -Steizer 사건(C-176/25) 법무관 의견 및 전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교수
김경숙

1. 개요

Steizer사건(C-176/25)¹⁾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그 쟁점에 비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을 정하는 「Rome II 규정」²⁾을 적용하여 보호국법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을 정하는 「Rome I 규정」³⁾에 따라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을 먼저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2026년 4월 23일 Emiliou 법무관은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의 방식적 유효성은 Rome II 규정 제8조에 따른 보호국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Rome I 규정, 특히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라이선스 또는 양도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책임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계약적 쟁점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주요내용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사건이다. 원고 BT⁴⁾는 독일에서 자동차 바닥매트 등 차량용 액세서리를 eBay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폴란드의 사진작가에게 제품 사진의 촬영을 의뢰하였다. 사진작가는 폴란드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한 뒤, 촬영한 사진을 USB 저장장치에 담아 BT 측에 전달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BT가 해당 사진을 온라인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있었으나, 별도의 서면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판매자인 IU가 동일한 사진을 자신의 eBay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자, BT는 독일 법원에

1) Case C-176/25, IU v BT (Steizer), ECLI:EU:C:2026:349

2)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3)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4) EU 사법재판소가 익명화하여 표시한 당사자 식별자(원고-BT, 피고-IU)로서, 이는 소송 당사자의 실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1심 법원은 문제된 사진이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사진작가가 BT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였으며, IU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U는 항소심에서 BT가 유효한 독점적 이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IU는 사진작가와 BT 사이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은 계약에 관한 문제이므로 Rome I 규정 제4조(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의 준거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인 사진작가의 상거소지인 폴란드의 법이 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폴란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서면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⁵⁾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BT가 유효한 독점적 이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BT는 독점적 이용권의 설정 또는 이전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의 처분과 관련된 물권적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Rome II 규정 제8조의 보호국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독일에서 저작권 보호가 청구된 이상 독일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법은 이 사건과 같은 독점적 이용허락에 서면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이루어진 이용허락도 유효하고, 이에 따라 BT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 제청 질문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EU 사법재판소에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선결적 판결을 위하여 제청하였다.⁶⁾

첫째,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사진에 관한 독점적 이용권 이전의 방식적 유효성을 판단할 때, Rome II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 즉 보호국법(*lex loci protectionis*)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사건에서는 독일에서 저작권 보호가 청구되었으므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독일법이 적용된다.

둘째, Rome II 규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쟁점을 계약적 문제로 보아 Rome I 규정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사진작가의 상거소가 폴란드에 있고 계약 역시 폴란드에서 체결된 것으로 전제되므로, 계약의 준거법과 계약체결지법 모두 폴란드법을 가리키게 된다.

3) 적용 법률

(1) Rome I 규정

Rome I 규정은 「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

5) 1994년 2월 4일 제정된 폴란드 「저작권 및 저작권접관에 관한 법률」(Ustawa z dnia 4 lutego 1994 r. o prawie autorskim i prawach pokrewnych) 제53조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제재로 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Opinion of Advocate General Emiliou, 23 April 2026, Case C-176/25, IU v BT (Steizer), ECLI:EU:C:2026:349, para 21.

tractual obligations)」으로, 법률충돌이 발생하는 민사·상사상 계약관계에 적용될 법을 EU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Rome I 규정 제3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적용될 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가 정한 객관적 연결기준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결정된다.

제11조는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formal validity), 즉 계약이 서면, 서명 또는 그 밖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규율한다. 계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계약 체결 당시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은 계약의 준거법 또는 계약체결지법 중 어느 하나가 요구하는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방식적으로 유효하다.

제12조는 계약의 준거법의 적용범위를 정한다. 이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이행,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에 따른 효과, 의무의 소멸, 계약의 무효 및 그 효과 등을 규율한다.

(2) Rome II 규정

Rome II 규정은 「비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으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 계약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준거법을 정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Rome II 규정 제4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인 제8조가 적용된다.

제8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비계약상 의무에는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국법주의(lex loci protectionis)’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 범위와 구제수단을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의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제15조는 Rome II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범위를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준거법은 책임의 근거와 범위, 책임을 부담하는 자, 면책 및 책임제한 사유, 손해의 존재와 산정, 손해배상 및 그 밖의 구제수단, 책임의 소멸과 시효 등 비계약상 의무의 성립과 효과를 규율한다.

4) Emiliou 법무관의 의견

Emiliou 법무관은 비록 제3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라도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의 방식적 유효성 문제는 비계약상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Rome II 규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유효성 문제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책임 자체와 직접 관련된 쟁점이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⁷⁾

7) C-176/25, paras 52-54 and 66.

또한 법무관은 이 문제를 저작권 자체에 관한 물권적 쟁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즉 권리의 이전·설정 가능성 자체는 저작권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호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권리의 계약상 이전이나 설정이 허용되는 경우, 그 계약이 서면 등 일정한 방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권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⁸⁾

이에 따라 법무관은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을 계약적 쟁점으로 보아, Rome I 규정 제11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폴란드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폴란드법이 요구하는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T의 독점적 이용권 취득은 방식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⁹⁾

3. 결론 및 시사점

법무관의 의견이 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저작권 침해소송이라고 하여 그 소송에서 제기되는 모든 쟁점에 일률적으로 보호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책임 및 금지청구와 같은 쟁점에는 보호국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은 이와 구별하여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국제적 저작권 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사진, 음악, 영상, 데이터셋, 소프트웨어 또는 AI 학습용 콘텐츠에 관한 라이선스가 여러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은 반드시 권리행사국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이나 계약체결지법이 정한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redirect/juris/liste.jsf?language=en&td=ALL&num=C-176/25>

8) C-176/25, paras 56-60, especially paras 57-58.

9) C-176/25, paras 67, 75-76.